

8/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서민교



서민교(徐民敎)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히토쓰바시(一橋)대학 사회학연구과 석사와 박사 수료. 전공은 일본 근현대사와 일본군사사(軍事史), 한일관계사 등이다.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연구원(2000~2005)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2005~2009) 등을 거쳐 현재는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2011년~현재)으로 있다. 저서로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4』, 『일본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과 다수의 연구가 있다.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군비 문제가 미국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일본의 우익 세력¹이 일본의 재군비 과정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자위대 창설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최근에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1990년대 이후 변모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 구상과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방위 구상의 변화 및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일본의 재군비의 출발이 서구에서의 냉전체제 격화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열전(hot war)²의 격화에 따른 미국의 대일점령정

1 일본의 ‘우익’세력이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규정하기 쉬운 개념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서는 “우익 혹은 우파란 보수, 애국심, 국수주의적인 사상의 경향”을 가리킨다고 설명된다(三省堂 編, 『大辭林』). 그러나 근대 일본에서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도 ‘일본의 우익 세력’이란 개념은 매우 모호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의 근대 천황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천황에 대한 규정을 현재의 상징천황제가 아닌 입헌군주로 바꾸어 일본국의 원수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인가 아닌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가 되어 미국에 종속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등한 동맹국가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찬반 여부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최근의 국제관계 흐름 속에서 세 번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한국,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의 일본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자리매김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세기 이래로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향했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국가 발전 방향의 종착지가 1945년의 패전이라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보수우익의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전전(戰前) 시대에 향수를 느끼는 것 같다.

결국 일본의 보수우익이란 용어는, 현재적 의미에서도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어떠한 위치에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기준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를 냉전체제로 규정하는 시각은 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를 설명하는 논리로서 여전히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후는 냉전구도 하에 벌어

책 변화에서 기인한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군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며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 정부를 움직였는가를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의해 재군비정책을 수행한 일본 정부를 위시한 우익 세력의 재군비 구상과 그 실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전후 일본의 정치를 주도했던 이른바 보수 본류로 언급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의 문민통제론(civilian control)적 재군비관³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 직후의 일본은 패전의 책임에 따른 반군부(反軍部) 정서가 팽배해 있었고,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 정서가 일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전 우익 정치가들의 복귀와 더불어 강력하게 대두되는 신헌법 제9조에 대한 개헌 움직임과 재군비 구상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960년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개헌 구상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군비는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우익 정권이었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 시기의 재군비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1950년대에 본격화하는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핫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는 전후 육군 해체 과정에서 공직 추방 등으로

진 구미 제국의 대리전 양상을 띤 열전(熱戰)구도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전후 아시아에서의 총성이 멈춘 것은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비롯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거쳐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까지를 기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유용태 외, 『냉전속의 열전과 갈등의 내면화』, 『함께 읽는 동아시아근현대사』 2권의 제7장 3절, 장비, 2011년 참조).

- 3 요시다 수상은 패전의 경험을 통해 전후 재군비 과정에서 구 육·해군의 갈등구조의 해소, 당시의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구 군인의 기용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재군비 과정에서의 군인 관료 인재 풀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구 육·해군 군인을 기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패전의 책임이 육군에 더 크다는 국민 정서는 전후 육군 출신자들이 재군비 정책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육군의 경우는 해군과 비교해 봤을 때 다양한 그룹과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구 해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Y위원회’ 등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해군의 재군비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일본 재군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다. 먼저 경찰예비대의 창설에서 1954년 일본 자위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일본 재군비 과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저술과 회고록이 있다.⁴ 이러한 접근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각각의 사건과 자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침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재군비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다. 일본의 재군비 문제를 미국 정부의 일본 재군비 계획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해명하고, 경찰예비대의 기본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⁵ 이들 연구는 미국 측의 논의 과정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일본 측의 우익 세력, 특히 구 육·해군 군인의 관점이 불충분하다는 점

4 フランク・コワルスキー, 勝山金次郎 訳, 『日本再軍備』, サイマル出版会, 1969; 秦郁彦, 『史録 日本再軍備』, 文藝春秋, 1976; 読売新聞戦後史班, 『「再軍備」の軌跡』, 読売新聞社, 1982.

5 三浦陽一, 「日本再軍備への道程 1945~1950年」, 『歴史学研究』, 第545号, 1985. 9; 古関彰一, 「冷戦政策における日本再軍備の基本的性格」, 歴史学研究会 編, 『歴史学研究 別冊特集』, 青木書店, 1978. 11; 増田弘, 「朝鮮戦争以前におけるアメリカの日本再軍備構想(一)」, 『法学研究』, 72巻 4号, 1999. 4.

을 지적할 수 있다.⁶ 그 외에도 일본의 재무장 및 자위대에 관한 통사적 연구로서 미일동맹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일본 재무장의 흐름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목해야 할 연구도 있다.⁷ 또 일본 재군비 문제를 전후 일본사회의 내셔널리즘 문제와 관련지어 보수에서 진보세력까지를 포함하는 일본의 방위관에 대한 연구도 있다.⁸

그리고 제4장에서 언급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은 PKO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실현하는 등 군사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군비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즉 일본국 헌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기원과 성격, 미일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다.⁹ 현재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재군비 구상과 실천과정

일본 재군비 문제는 미국의 1947년 3월의 트루먼독트린과 6월의 마셜플랜

6 유지아, 「일본 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연합국총사령부(GHQ) 복원국내의 ‘핫토리(服部)그룸’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3, 2011. 6을 참조.

7 柴山太, 『日本再軍備への道』, ミネルヴァ書房, 2010; 増田弘, 『自衛隊の誕生—日本の再軍備とアメリカ』, 中公新書, 2004; 増原恵吉, 「警察予備隊から自衛隊まで」, 安藤良雄 編, 『昭和經濟史への証言 下』, 毎日新聞社, 1966; 후지와라 아키라,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하권), 제이앤씨, 2013 등을 참조.

8 植村秀樹, 『再軍備と五十五年体制』, 木鐸社, 1995; 大嶽秀夫, 『再軍備とナショナリズム』, 中公新書, 1988 등 참조.

9 豊下櫛彦, 『集團的自衛權とは何か』, 岩波新書, 2007. 이 외에도 자위권의 개념과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森肇志, 『自衛權の基層—国連憲章に至る歴史的展開』, 東京大学出版会, 2009; 村瀬信也, 『自衛權の現代的展開』, 東信堂, 2007; 浅井基文, 『集團的自衛權と日本国憲法』, 集英社, 2002; 松竹伸幸, 『集團的自衛權批判』, 新日本出版社, 2001 등이 있다.

의 발표 등으로 인한 냉전의 격화,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안감의 증대가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에 변화를 초래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1월 미 육군장관 로얄(K. C. Royall)이 일본을 “극동에 있어서 반공의 방벽”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일점령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경찰력 증강 방침이 결정되어 1948년 11월에 GHQ에 하달되었다.¹⁰ 일본 측에서 위의 구상에 응해 육군 출신의 다쓰미 에이이치(辰巳栄一)¹¹ 중장과 핫토리 다쿠시로(服部卓四郎)¹² 대좌 등이 중심이 되어 재군비 계획표를 작성했고, 해군 출신으로는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郎)¹³ 대장의 후원을 받던 호시나 겐시로(保科善

10 1948년 10월 7일 NSCB/2 참조. 위의 구상은 기동력을 가진 경찰예비대(Police Reserve Forces)를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古関彰一, 「冷戦政策における日本再軍備の基本的性格」, 歴史学研究会 編, 『歴史学研究別冊特集』, 青木書店, 1978).

11 다쓰미 에이이치(辰巳栄一)는 육사 27기(육대 37기)의 참모장교로서 패전 당시 중국에 출전 중인 제3사단장을 역임했다. 점령기에는 구군 출신의 반공공작기관이었던 ‘가와베’(河辺) 기관을 지휘했고, 영국주재 무관시절 친분을 쌓았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군사고문으로서 경찰예비대의 간부 인선을 담당했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협력자로서 내각조사실과 자위대 설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최근의 미국 측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有馬哲夫, 『大本営参謀は戦後何と戦ったのか』, 新潮新書, 2010).

12 핫토리는 일본 육사 34기(육대 42기)로서 전형적인 참모장교로서 전후에는 제1복원청 사실조사부장(후에 자료조사부장)을 역임하고, GHQ 참모 제2부(G2) 부장인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 밑에서 미군에 의한 태평양전쟁 전사 편찬에 협력했다. 1948년 말 윌로비는 전사조사부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일본 재군비의 연구를 위탁했고, 여기서 이른바 재군비 연구를 위한 ‘핫토리기관’(服部機関)이 생겨났다(有馬哲夫, 『大本営参謀は戦後何と戦ったのか』를 참조). 한국 측의 연구로서는 유지아, 「일본 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연합국총사령부(GHQ) 복원국내의 ‘핫토리(服部)그룹’을 중심으로」 참조.

13 노무라는 해군 대장 출신으로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전후에는 공직 추방 해제 직후 요시다 시게루의 요청으로 재군비 문제 조사에 깊이 관여해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해상경비대 창설에 관여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참의원을 2기에 걸쳐 역임하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을 담당하면서 외교조사회 회장도 지냈다. 1950년대 하토야마(鳩山) 내각과 기시(岸) 내각 당시 방위청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구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으로는 노무라(野村吉三郎)의 『米國に於て日米交渉の回顧』(岩波書店, 1946)과 그 측편에 해당하는 『アメリカと明日の日本』(読売新聞社, 1947), 요시무라(吉村道男)가 감수한 복각판 『日本外交史人物叢書』(21卷)(ゆまに書房, 2002), 도요타 미노루(豊田穰)의 『悲運の大使野村吉三郎』(講談社, 1992/講談社文庫, 1995) 등이 있으며,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野村吉三郎関係文書』가 보관되어 있다.

四郎)¹⁴ 중장과 아마모토 요시오(山本善雄)¹⁵ 소장 등이 중심이 되어 해군 재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¹⁶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경찰예비대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사령관은 요시다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예비대의 창설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는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에 8000명을 증원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는 8월 10일 정령(政令)으로서 경찰예비대령을 공포해 당일로 시행에 들어가 8월 23일 제1진 약 7000명이 입대했다.¹⁷ 같은 해 10월 말까지 7만 5000명의 대원이 입대했는데, 당시 구 군인은 공직추방령으로 인해 인선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간부요원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¹⁸ 그리고 12월 말에는 경찰예비대 편성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총대총감 아래 전국을 4개의 관구대(管區隊)로 나누어 각각 관구총감 이하 간부가 임명되어 보병 4개 사단에 해당되는 부대가 편성되었다.

일본의 재군비 시작은 GHQ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주도권도 미군 고문단이 장악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14일 GHQ 민사국장 셰퍼드 소장(W. Shepard)이 고문단장이 되었고 실무는 부단장인 코왈스키(Kowalski) 대령 이하의 고문단이 담당하게 되었다.¹⁹ 즉, 일본 재군비의 첫걸음은 미군에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일미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이유로 일본 국내 치안대책을 중요 임무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경찰예비대령 제3조에는 그 임무를 “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히

14 호시나 겐시로는 해군병학교 41기로서 최종 계급은 해군 중장으로 대본영 해군종합부장으로 패전을 맞이했다. 패전 직후 제2복원성에서 일을 했고 중의원 의원을 4기에 걸쳐 역임했다.

15 일본 해군 군인. 최종 계급은 해군 소장.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군정(軍政)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마지막 해군 군무국장을 역임했다. 전후에는 해상자위대의 전신인 해상경비대 건설준비위원회('Y위원회')를 주관하면서 해군의 재군비 업무에 협력했다(NHK放送局自衛隊取材班 編, 『海上自衛隊はこうして生まれた「Y文書」が明かす創設の秘密』, 日本放送出版協会, 2003 참조).

16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45쪽.

17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51쪽.

18 読売新聞戦後史班 編, 『第1章 警察予備隊』, 『昭和戦後史「再軍備」の軌跡』, 読売新聞社, 1981; 葛原和三, 『朝鮮戦争と警察予備隊—米極東軍が日本の防衛力形成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 『防衛研究所紀要』第8巻 第3号, 2006, 3.

19 フランク・コワルスキー, 勝山金次郎 訳, 『日本再軍備—米軍事顧問団幕僚長の記録』 참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내각 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50년 창설 당시의 경찰예비대는 전국 28개소의 미군 캠프에 수용되어 13주간 624시간의 기본 훈련을 받았는데, 기본 훈련 가운데 ‘대폭동 및 전투대형’ 훈련 시간이 129시간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²⁰

1) 구 일본 군인들의 움직임

이렇게 일본의 재군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때 구 일본군의 잔존기관으로 남아 있던 후생성 복원국에 남아 있던 구 군인들은 구 일본군 측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으며, 월로비가 주도하던 GHQ 참모 제2부 역사과에 모여 있던 군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육군 측에서는 GHQ 역사과의 멤버였던 핫토리 다쿠시로 대좌가 중심이 되었다. 이른바 ‘핫토리그룹’은 월로비의 지지를 얻어 경찰예비대 창설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구 군인 그룹을 기피하는 당시의 반군부 감정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무산되었지만 구 군인 그룹은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이었고 결국에는 조직체제의 정비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대 지휘 능력이 있는 구 군인의 활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구 군인에 대한 공직 추방을 서둘러 해제하여 구 군인을 간부로 채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²¹

구 군인과 미군과의 관계²²는 유지아의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미군은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일본 군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게 했고, 일본 군대의 해산과 무장해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구 일본군 간부 군인들은 미군에 협력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은 시간

20 防衛庁陸上幕僚監部, 『警察予備隊総隊史』, 防衛庁陸上幕僚監部, 1958;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55쪽 참조.

21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57쪽.

22 유지아, 「일본 재군비과정에서 제국군인의 역할과 위상: 연합국총사령부(GHQ) 복원국내의 ‘핫토리(服部)그룹’을 중심으로」 ‘제2장 제국군인과 미국과의 관계’ 참조.

이 지남에 따라 미군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각종 기관들을 구성하여 미군에 협력함과 동시에 장래 일본의 보안과 군비의 재건축을 논의하는 일도 행했다. ... 그 후 군 조직이 해체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관을 모체로 하여 아리스에 기관(有末機關), 나카무라 기관(中村機關), 가마타 기관(鎌田機關)과 같은 미군 협력기관들이 창설되어 미군과의 연락사무 이외에 구 일본군의 편제 병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미군이 필요로 하는 지역·지리 관계 등 정보를 집약하여 미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 [대표적으로] 1947년 맥아더 전사 편찬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내걸고 GHQ에 창설된 역사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역사과 내의 구군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연락, 정보 협력기관이나 복원 부서 출신으로 그동안 미군과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도조 히데키의 비서관을 지내고 전쟁 중 참모본부 1과장(작전과장)을 역임하면서 전쟁 지휘의 중추에서 실무를 담당한 제1복원국 사실조사부장, 자료정리부장에 임명된 핫토리 다쿠시로(服部卓四郎) 대좌가 주임계획자 역할을 맡았다. 이 역사과의 공식적 임무는 전사 편찬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각종 전투 전술 및 기록 자료들을 모아 이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그 외 각종 정세 동향이나 관련 정보 보고 및 인사 관련 사항들도 취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술 작전 편제 연구로 이어져 미군에 전술적 교훈과 조언을 제공하고 군 재건 구상의 토대를 제공하는 바탕으로 이어졌다.

구 군인 장교의 추방 해제와 더불어 1951년 4월 243명이 채용되어 하급간부로 충당되었고, 동 8월 6일에는 위관급 약 400명이 하급간부로 채용되었다. 채용 과정에서는 “만약 (공직)추방이 해제되면 (경찰)예비대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가?”라는 권유장이 당사자에게 발송되어 마치 예비대 입대가 추방 해제의 조건인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급간부 요원으로 입대한 구 군인들이 이후 보안대와 자위대의 중추부를 장악하게 된다.²³

23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58쪽 참조.

2) 해군 재군비의 구상과 실천: 'Y위원회'²⁴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 7월의 맥아더 지령에 의해 해상보안청의 정원이 8000명으로 증가했다. 육군과는 달리 해군의 경우는 인원 면에서도 전전부터의 연속성이 강했고, 기뢰 제거를 위해 복원국에서 물려받은 소해(掃海)부대가 해상보안청에 소속되어 약 100척의 소해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구 해군 측의 재군비 구상과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마모토 요시오(山本善雄) 전 소장과 요시다 히데미(吉田英三) 전 대좌는 패전 4일 후에 일본 해군 측의 대표로서 미국과의 항복 협의에 임했던 구 일본 해군의 핵심들이었다. 1948년 1월부터 구 해군 군인들의 복원을 담당하는 제2복원국을 거점으로 극비리에 해군 재군비를 연구하는 그룹이 결성되었다. 제2복원국의 요시다 히데미 전 대좌, 나가이시 마사타카(永石正孝) 전 대좌와 데라이 요시모리(寺井義守) 전 중좌들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군비 재건 계획안 연구를 진행했다. 제2복원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아마모토 요시오 소장, 나가사와 히로시(長沢浩) 대좌, 나가이시 대좌 등은 원래 공직 추방의 대상이었지만 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추방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1950년 10월부터는 해군 재건 계획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요시다 대좌 등이 작성한 「재군비연구에 관한 연구자료」에서는 새로운 해군의 목적을 소련의 침략을 상정하고 있는 전수방어 개념을 기축으로 하는 자위를 위

24 'Y위원회'란 미국에게서 대여 받은 함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1951년 10월에 구 해군 관계자 및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위원회를 말한다.

Y위원회의 결의 제1호인 「Y위원회 설치요강」에 의하면 그 목적과 임무는 '미군으로부터 공여된 병기, 수품, 함정 등을 수령하고 보관 정비함과 더불어 이 함정 등의 능력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요원을 모집하고 급여하며 또 양성시키기 위한 제도 방식을 입안 계획하고 더불어 이를 서둘러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Y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연구조사와 더불어 기관 설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1954년 4월 26일 해상보안청 내에 해상경비대가 창설된 시점에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Y위원회연구자료」를 비롯한 사료, 총 39점은 해상자위대 창설경위 자료로서 현재 방위연구소에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참고로 Y위원회의 Y는 아마모토 요시오 전 해군소장의 이니셜에서 따왔다는 설과 육·해군 공식 폐지 이후 이들의 부활, 즉 재무장을 연구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을 'X'로, 해군을 'Y'로 암호화해 사용했다는 설 등이 있다.

한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군비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군의 정치 불간섭’을 들고 있다. 전전의 군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방위는 육상 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항공 및 해상 병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해군의 창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자료를 정부 요인들에게 배포하는 한편으로 이들 재군비 연구 그룹은 1951년 1월에 미국 점령군 당국과 비밀리에 접촉해 미국의 힘을 빌려 재군비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 그룹과 미국 측을 연결시켜 준 인물이 노무라 기치사부로 전 해군 대장²⁵이었다. 노무라는 함대 사령관 및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인물로서 당시 공직 추방 중이었지만 매주 도쿄 시내의 호텔에서 일본에 체재 중이던 미 해군의 얼레이 버크(Arleigh Albert Burke) 해군소장을 만나서 이들 그룹의 해군 재군비 계획에 협조해 줄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버크 소장은 한국전쟁에서의 작전을 입안하는 참모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었다.

「Y위원회 결의 기록」(Y委員會決議記錄), 「Y위원회 의사 적요(전 6권)」(Y委員會議事摘錄)의 별책 「일본 재군비에 관한 사안(私案)」은 요시다 하지메(吉田元) 전 대좌 등이 미국 해군 군인들과 함께 작성한 비밀문서다. 이 문서에 의하면 일본 해군의 재건은 미국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본은 서둘러 최소한도의 자위병력의 재건을 꾀하여 (한국전쟁에 분주한)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문서가 미국 측의 대일정책 책임자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 재군비 연구 그룹은 그 후에도 버크 소장을 통해 미국과 소통하면서 구 해군 그룹과 미국 측이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군의 재군비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51년 8월에 미국의 국방장관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본 해상방위 조직

25 주 13) 참조.

의 창설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동 10월의 미국 함대를 일본에 대여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Y위원회'가 발족되게 되었다.

1951년 10월 20일 요시다 수상의 지시를 받은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관방장관이 아마모토 요시오 전 해군 소장과 야나기사와 요네키치(柳沢米吉)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해상경비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인선을 의뢰했다. 이 위원회는 제2복원국의 구 해군 군인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으로 10월 31일 발족되어 'Y위원회'라고 명명되었다. 'Y위원회'는 비밀리에 일본 해군의 재건 계획을 작성했다.²⁶

1951년 10월 오카자키 관방장관은 아마모토 요시오(山本善雄) 소장에게 미 해군으로부터 부여받는 함선, 병기 등의 수령, 보관, 운용에 대한 제도 등을 연구할 위원회 설치를 의뢰했다. 아마모토 소장은 요시다 수상의 주영 대사 시절 주영 해군 무관으로 육군의 다쓰미 중장과 같이 근무를 했다. 아마모토는 노무라 대장과 상의를 한 후 관방장관의 의뢰를 수락했다. Y위원회는 구 해군 군인 8명, 해상보안청의 문관 2명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발하고 해상보안청 내에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들의 명단은 <표 1>과 같다.

이 위원회가 후에 해상보안대를 탄생시킨 Y위원회다. 이들 중에 나가사와, 요시다, 데라이 등은 나중에 해상보안대에 입대했다. Y위원회는 1951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6개월 간 29차례의 회합을 가지면서 그들이 5년에 걸쳐 연구해 왔던 해군의 재군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Y위원회는 1954년 4월 26일 해상보안청 내에 해상경비대가 창설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1952년 4월에는 해상보안청 내에 해상경비대가 발족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바뀌자 해상경비대는 보안청의 지휘 하에 들어갔으며, 1954년 7월에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개칭되면서 해상자위대로 이

26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60쪽 참조.

〈표 1〉 Y위원회 위원 명단

아마모토 요시오(山本善雄)	전 소장(47)	군무국 1과장-군무국장
아키시게 시즈에(秋重実恵)	전 소장(機28)	군수국장
나카이 다로(永井太郎)	전 대좌(48)	교육국 1과장 겸 2과장
나가사와 히로시(長沢浩)	전 대좌(49)	군무국 제1과장 등
하쓰미 미쓰고로(初見盈五郎)	전 경리대좌(機8)	경리국 제3과장
요시다 히데미(吉田英三)	전 대좌(50)	군무국 3과장
모리시타 류이치(森下陸一)	전 중좌(機34)	인사국원
데라이 요시모리(寺井義守)	전 중좌(54)	군령부 1부 1과 항공주무원
야나기사와 요네키치(柳沢米吉)		해상보안청장관
미타 가즈야(三田一也)		경비구난감(警備救難監)

* 패전 전의 계급. 괄호 안은 해군병학교 기수

** 패전 당시의 직무 및 현직

름이 바뀌게 되었다. 대원의 모집에서 부대의 설치 등 육군에 해당되는 경찰예비대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Y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해상경비대는 창설되었던 것이다.²⁷

3. 일본의 자위대 구상과 창설 과정

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과 재군비

1951년 9월 8일 일본과 48개 국가 사이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 조인식이 조용히 거행되었다. 강화조약 제5조 c항에서는 “연합국은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제51장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보유하는 것 및 일본국이 집단적 안전보장

27 海上自衛隊50年史編纂委員会, 『海上自衛隊50年史-本編』, 防衛庁海上幕僚監部, 2003; 海上自衛隊50年史編纂委員会, 『海上自衛隊50年史-資料編』, 防衛庁海上幕僚監部, 2003.

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해 일본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했다. 또 제6조 a항에서는 강화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포츠담선언에서 언급했던 일본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점령군이 그 임무가 종료하면 철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소련을 비롯한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도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불안감을 표명했지만 미국의 의사에 의해 일본은 군비 제한 조항이 없는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²⁸

같은 날 조인식이 거행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목적은 일본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미군의 무제한 그리고 무기한 일본 주둔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전문 및 5개조로 구성된 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종속적인 군사동맹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안보조약 제3조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있어서의 배치를 규율하는 조건은 양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미군 주둔, 기지 배치 문제 등을 양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넘김으로써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미일 양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은 1952년 2월 28일 미국의 러스크 특사와 존슨 육군 차관보와 오카자키 가쓰오 외무대신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전체 29개조에 달하는 내용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에 준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첫째, 일본 내 미군기지의 무제한 무기한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 둘째, 미군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재판권을 미군이 갖는다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 셋째, 미군 및 군속에 대한 경제적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 즉, 수입품의 무관세와 일본의 조세 면제 등이 규정된 특권이었다. 그리고 미군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일합동위원회를

28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65~67쪽 참조.

설치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행정협정 제26조).²⁹

2) 자위대의 창설 과정

강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GHQ는 경찰예비대의 병력 증강을 요구했다. 극동군 참모장 히키(Doyle, O. Hickey) 중장은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인 다쓰미 에이이치 중장에게 32만 5000명을 요구했고, 결국 우선은 11만 명에서 시작하여 이듬해에 13만 명으로 늘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52년 1월 5일 리지웨이 최고사령관과 요시다 수상의 회담에서 일본의 점진적 방위력 증강과 독립 후의 경찰예비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요시다 수상은 보안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안대와 경비대를 두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육·해군은 양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전전의 육·해군의 갈등이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쓴 경험을 겪었던 요시다 수상은 육·해군 통합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일본의 재계에서도 재군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1952년 8월 미일경제협력간담회를 설치하고, 그 하부기구로서 방위생산위원회를 설치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병기, 함선, 항공기 등 10개가 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재군비와 군수공업의 부활을 위한 조사 및 심의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1952년 8월 1일 육·해군을 통합하는 미 국방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보안청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보안청법에 의해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편되었고 이 두 부대에 대한 관리는 보안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안청에 이 두 부대를 지휘 운용할 제1막료감부와 제2막료감부가 설치됐다. 8월 4일 보안청 장관 자격으로 요시다 수상이 보안청 간부들에게 대한 훈시 중에 “새로운 국군의 토대가 되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9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68~70쪽 참조.

한편 일본의 재군비 문제는 합헌·위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1952년 3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요시다 수상은 “자위를 위한 전력은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력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전력 보유가 위헌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조차 폭탄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요시다 수상은 3월 10일 “자위를 위한 것이라도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군비는 하지 않는다”고 앞의 발언을 정정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재군비는 전력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다시 문제가 되어 개헌을 먼저 하고 합법적으로 재군비를 추진하지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공직 추방에서 해제되어 정계에 복귀한 구 정치가 그룹, 그 중에서도 A급 전범이었던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와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하토야마 이치로 등이 정계에 복귀해 개헌과 합헌적인 재군비를 주장했다. 자유당 내에서는 요시다파(吉田派)와 하토야마파(鳩山派)가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그것은 정권 다툼임과 동시에 헌법 개정과 재군비를 둘러싼 정책상의 대립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의 보수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의석 수가 3분의 2가 넘었으므로 개헌은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이었다.³⁰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는 평화운동, 호헌운동으로 활발하게 대두된다.

1952년 10월 15일에는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편되었다. 보안대는 11만 명의 인원으로 1개 방면대, 4개 관구대로 편성되었다. 보안대 발족 이전인 7월에 전 대본영 참모를 중심으로 한 대좌급 11명이 보안대에 입대해 상급간부로 취임했던 것을 보더라도 보안대에서 자위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 구인이 중추적 지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구 육·해군과의 연속성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³¹

30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75쪽 참조.

31 読売新聞戦後史班 編, 「第1章 警察予備隊」 참조.

〈표 2〉 보안대에 입대한 구 군인 장교의 추이

성명	육사 기수	패전 당시 직책	자위대 직책
기시모토 주이치(岸本重一)	육사 34기	대본영 참모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장, 육장 (陸將:육상자위대 최고 계급)
마쓰타니 마코토(松谷誠)	육사 35기	참본 전쟁지도반장	육상자위대 북부방면총감, 육장
스기야마 시게루(杉山茂)	육사 36기	대본영 참모	육상자위대 육막장, 육장
이모토 구마오(井本熊男)	육사 37기	제2총군 참모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장, 육장
스기타 이치지(杉田一丈)	육사 37기	제17방면군 참모	육상자위대 육막장, 육장
신구 요타(新宮陽太)	육사 38기	대본영 참모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장, 육장
다카야마 노부다케 (高山信武)	육사 39기	육군성 군사과원	육상자위대 육막부장, 육장
호소다 히카루(細田熙)	육사 39기	육군성 병비과장	육상자위대 동부방면총감, 육장
요시하시 가이조(吉橋戒三)	육사 39기	시종무관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장, 육장
마쓰다 다케시(松田武)	육사 39기	육군항공본부 정비 부원	항공자위대 공막장, 공장
사쿠라 요시오(桜喜雄)	해병 52기	대본영 참모	육상자위대 북부방면 부총감, 소장

〈표 2〉만 보더라도 구 군인 장교 출신자들이 보안대를 거쳐 이후에 창설되는 자위대에서도 최고 지휘부를 장악하는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구 육·해군과 자위대의 인적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즉, 전후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전전의 일본군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면서도 특히, 그 인적 구성에서는 전전의 일본군과 전후 일본의 자위대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1952년 8월 1일을 기해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칭되어 해상보안청 관할에서 보안청 관할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 임무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혹은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 유지를 위해”(해상보안청법 제25조 2항)에서 “우리나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라고 변경되어 군대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안청의 발족과 더불어 그 부속기관으로서 보안대학교와 보안연수소, 기술연구소가 신설되었다. 보안대학교는 구 육해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데, 전전의 패전 요인의 하나가 육·해군의 대립에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시다 수상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통합사관학교안이 관철되었다. 보안대학교 제1기생이 1953년 4월에 입학했고, 이들은 이후 자위대의 중추간부로 성장하게 된다.

보안연수소는 구 육군대학교와 해군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것에 해당된다. 보안대와 경비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 및 간부직원의 교육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기술연구소도 육·해군을 통합해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1952년 8월에 설치되었다.

3) 경단련의 재군비 구상

한편으로 일본 경제계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단련(経団連)³² 방위생산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행해졌다. 경단련은 방위생산위원회 내에 심의실을 설치하고, 패전 당시 육군성 군무국장이었던 요시즈미 마사오(吉積正雄)³³ 육군 중장과 해군성 군무국장이었던 호시나 겐시로 해군 중장 등 구 육·해군 장성을 불러 재군비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그 결과물이 1953년 2월에 완성된 「방위력 정비에 관한 시안」이다. 이 안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력은 육상 15개 사단 30만 명, 해상 29만 톤, 7만 명, 항공 2900대 13만 명을 목표로 6년 기간 내에 편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조 9000억 엔으로 산정되었다. 당시 보안대가 11만 명, 경비대가 2만

32 일반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1946년에 발족한 경제단체로서 일본상공회의소와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 3단체의 하나를 가리킨다. 2002년에는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과 통합되어 종합경제단체로 발족되었다. 1950년대 재계의 일본 자민당의 최대의 지지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33 요시즈미 마사오(吉積正雄, 1893~1985)는 일본 육군 중장 출신으로 최후의 육군성 군무국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전후에는 제1복원성 총무국장을 지냈다.

7000톤, 1952년도 보안청 예산이 553억 엔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방대한 계획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시안은 비밀리에 주일 미국대사관을 거쳐 미국 국방총성에 제출되었다.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⁴ 1951년 10월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MSA)을 제정해 당시까지의 각종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하나로 묶어 피원조국의 방위노력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일본 재계는 바로 이 MSA 원조에 눈길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³⁵

4) 보안청의 재군비 계획

보안청은 발족 직후인 1952년 9월, 마스하라(増原) 차장, 하야시(林) 제1막료장, 나가사와(長沢) 제2막료장을 위원으로하는 제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방위 구상을 검토했다. 보안청의 제도조사위원회는 그 존재조차도 비밀로 취급되던 비공개 위원회였다.

1953년 3월 말에 이른바 일본 정부기관이 만든 최초의 방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도조사위원회의 제1차 안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1953년에서 1965년까지 육상 30만 명, 해상 45만 5000톤, 항공기 6744대로 구성되는 대규모 병력을 편성 운용한다는 것으로서 재정적으로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방위 계획이었다. 제2차 안에서는 육상 20만 5000명, 해상 14만 3000톤, 항공기 1536대로 축소된 안이 작성되었고, 이후에 제10차 안까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안청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내부의 시안으로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요시다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도 아직은 대규모 군비 확충에는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4 読売新聞戦後史班 編, 「第1章 警察予備隊」 참조.

35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하권), 82쪽 참조.

5) 미국의 MSA 원조와 일본의 재군비

미국의 MSA 원조 결정에 앞서 일본이 어떠한 방위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었다. 일본이 당면한 재군비 규모와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 정부가 먼저 결정해서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원조를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1953년 10월에 일본 자유당 정조회장이었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무차관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과 회담을 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강력한 재군비를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가급적 군사력을 축소시키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의 원조를 끌어내려고 시도했다.³⁶

미국은 일본에 대해 3년간 육상 10개 사단 32만 5000명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18만 명 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 국민 정서 그리고 재정 사정을 이유로 급속한 증강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다. 그 결과 10월 30일에 ‘자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드디어 1954년 3월에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이 대 소련 전략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1954년 6월 9일에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개편되고 외국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군사 조직인 자위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36 宮沢喜一, 『東京—ワシントンの密談』, 中公文庫, 1956 참조.

4. 현대 일본의 방위 구상의 변화:

일본이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인가?

전후 1946년에 제정된 일본이 신헌법인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방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일본은 전쟁과 무력의 방기를 헌법 속에서 명기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전쟁을 부정하고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의향을 받아들여 1954년에 자위대를 창설하는 등 재군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일본의 재군비 문제가 헌법 제9조와 모순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은 현재까지 ‘해석 개헌’³⁷을 통해 헌법 제9조의 규정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5조 c항에서 “연합국은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제51장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보유하는 것 및 일본국이 집단적 안전보장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은 승인한다”고 규정해 일본이 개별

37 해석개헌이란 헌법 조문의 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헌에 가까운 효과를 올리겠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재군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이미 해석개헌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제 51조에서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맹국이 취한 조치는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후략)”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해석³⁸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다. 일본 정부는 1981년에 정리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우리나라(=일본)가 국제법상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하지만 헌법 제9조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해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³⁹

당시까지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

38 2003년 7월 15일, 일본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의 일본 정부의 답변서(平成十五年七月十五日受領 答弁第一一九号, 内閣衆質一五六第一一九号 平成十五年七月十五日).

39 1981년 5월 29일, 일본 중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昭和五十六年五月二十九日受領 答弁第三二号(質問の三二)内閣衆質九四第三二号 昭和五十六年五月二十九日).

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상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의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이 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상호동맹적인 성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나이(Joseph S. Nye)가 정리한 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는 동맹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다”(Prohibi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is impediment to the alliance)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살펴볼 때, 최근의 일본의 변화 중에 주목할 점으로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즉 이른바 ‘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일본의 재군비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이 1995년에 언급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EASR)에 의거해 1997년 9월에 당시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 사이에 ‘신 가이드라인’이 합의되었다. ‘신 가이드라인’의 영어 표현은 ‘War Manual’로 불린다. 여기서 지적하는 주안점은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에 입각해 ‘극동’ 이외의 ‘주변 사태’까지 포함한 일본의 군사적 분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향한 커다란 진일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일본에서는 1999년 6월 주변사태안전확보법 등 ‘유사 3법’이 강행 체결되었고, 전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해외 파병을 가능

40 Richard L. Armitage &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 Report of the CSIS Japan Chair,” 2012(http://csis.org/files/publication/120810_Armitage_USJapanAlliance_Web.pdf)

하게 했다. 전수방위의 군대였던 자위대가 자위와는 관련이 없는 주변 사태에 대해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이란 지리적 개념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무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무기의 사용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도 역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법적 근거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로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만약 일본이 개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 정서는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개헌’이라는 수단이 어느 단계까지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전후 일본 우익 세력이 주도해 왔던 일본의 재군비 과정을 검토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는 전쟁의 금지와 무력의 방기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후 착착 재군비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미일안보동맹의 강화 수단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외교, 군사의 과제를 다가오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먼저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안전보장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란 조항에서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중에 “영토주권을 호지(護持)한다”라는 항목을 자민당의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일본의 방위력의 강화와 위기관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문건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국과는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우호적인 파트너로 지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실질적 동맹 관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이며,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7000여 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각지에 미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미군 후방 지원이라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을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재군비 문제는 현재적 시점에서 일본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국경 분쟁 문제를 가시화시키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과 갈등의 골을 강화시키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헌법 개정과 합법적인 재무장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국경 분쟁이란 전술을 취하고 있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의 국제 분쟁은 결국에는 무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수단을 취하게 만든다.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의 현실은 전근대나 근대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20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의 시대였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즉 전쟁 책임 문제, 전후 청산 문제, 동아시아와의 역사적 화해의 문제 등이 여전히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 현재의 시점

41 2011년 7월 19일자 ‘자유민주당 국가전략본부’ 「국가전략본부 제5분과회(외교·안전보장)」 참조.

에서 일본의 재군비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며, 최근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갖고 있는 일본의 방위 구상의 변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21세기 현재의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냉철하게 재음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악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에게 미는 그가 급진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체로 전후의 법적 질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생의 안전’을 빌미로 개인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의 초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아베는 법의 정지를 위해 미에 기대했던 미시마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주제어: 극우, 보수, 정치 미학, 아베 신조, 미시마 유키오, 법 폭력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 고바야시 요시노리 『전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 한정선

투고일자: 2013.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3.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익 대중주의의 미학을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익 사상을 재구성 및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바야시는 『신오만주의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제를 ‘대동아전쟁’으로 호명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을 했다. 『전쟁론』으로 귀결된 이 작업은 일본 내에서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때, 그의 언설 전략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주제어: 만화,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 국가귀속성, 기형화, 기호화, 평면화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 서민교

투고일자: 2013. 12. 8 | 심사완료일자: 2013.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195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햇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군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구 해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창구가 존재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Y위원회’의 존재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1954년 3월에 MS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해 가게 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

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법적 근거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로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 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만약 일본이 개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 정서는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개헌’이라는 수단이 어느 단계까지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일본의 재군비, 우익, 자위대, 방위청, 집단적 자위권, Y위원회, GHQ

연구논단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 조아라

투고일자: 2013. 11. 26 | 심사완료일자: 2013. 12.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국의 국내·국제 정세 속의 ‘경제 논리’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이 부담할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방식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담의 중지를 가능한 한 막고, 공적인 강제나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한일회담의 ‘관계자’로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종필-오하라 합의가 타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 글은 케네디 정권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신중한 개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비대칭적으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대미 교섭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의 주도권은 주로 일본이 쥐게 되었으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고 이를 한국에 설득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자체의 난점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상황, 일본의 대미 교섭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케네디 정권, 원조정책, 비대칭적 압력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3. 12. 1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최근 구성원이 현저하게 다양해진 재일 동포사회에서의 올드커머(자이니치, 구정주자)와

through “patriotism,” an emotion which cannot be converted into visible value such as “beauty,” is problematic. This is why Abe appears to have radical understanding of postwar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very conservative viewpoint, in light of Mishima Yukio who also advocated the necessity of political aesthetics.

Though it was an important political role of the pre-war Emperor (Ten-no) to bestow beauty on the war dead, Abe, deviating from the ol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role of the Emperor, only acknowledges Emperor as a figure who prays for the safety of life.

After all, this shows that Abe’s concept of “beauty” falls into victim of the postwar legal order which paradoxically internalized the conflicting aspects of radicalism and conservatism. Lacking any awareness on the matter, Abe revised the law in order to intensify the legal enforcement under a false pretense of “the safety of life,” which led to further transcendence of the law. In this sense, Abe is more threatening than Mishima, who placed his hope on the beauty in order to suspe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 **Keywords:** Far-right, conservatism, political aesthetics, Abe Shinzo, Mishima Yukio, Legal violence

Kobayashi Yoshinori and Caricaturing Japanese Populism | HAN Jung Sun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and workings of Japanese populism by focusing on the caricatures of Kobayashi Yoshinori. Kobayashi is a well-known cartoonist and his works have been influential in shaping popular opinions on various issues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n this paper, I limit the scope of analysis on the piece entitled Sensōron, since this is the piece that has been widely received by people in and outside of Japan and has made him a popular social pundit. In analyzing Kobayashi’s strategies of narrating “history issues” and of visualizing such narratives, I identify three strategies respectively for the narrative and the visualization. As for the narrative strategies, they are 1) anti-establishment, 2) common-sense centrism, and 3) nation centrism. As for the visualization strategies, they are 1) deformation, 2) symbolization, and 3) complanation.

• **Keywords:** Caricature, Anti-establishment, Common sense, Nation, Deformation, Symbolization, Complanation

The Defense Framework in Postwar Japan: The Design and Practical Procedures of the SDF by the Japanese Right-Wings | SEO Min Gyo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earmament in postwar Japan from 1948 to 1950s during which the Self-Defense Force was established, and tries to understand how Japan’s rearmament was designed and what characterized its practical procedures.

As the rearmament process became fully in progress in the 1950s, the recruitment of the military officials of the Imperial Army, the idea which was originally rejected, became inevitabl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s such as Hattori Group (formerly organized by Imperial Army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dvisor to prime minister Yoshida.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both army and navy were “officially” dismissed after the war ended, the minesweeper units of the Imperial Navy remained undissolved. Unlike the case of the army, the networks of the navy personnel which centered around Japan Coast Guard was administered in a unified manner, and it is noteworthy that some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who assumed office had close personal connection with Yoshida. That is wh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Commission Y.”

Japan promised a large-scale rearmament to the US after the two signed MSA agreement in March 1954, which obliged the US to provide support for its allies and the US allies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 SDF, often called “military without name” or “non-militaristic military,” which was the product of this agreement, began to function as a physical apparatus to take over Japan’s defense.

Recently, there have been two conflicting arguments regarding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en we look at the overall framework of these arguments, however, most agree that Japan should provide defense to the US “in such times as the United States is under attack by a third party.” In this reasoning,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crucial question as to whether defending of the United States is to be classified as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If Japan accords itsel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possibility for Japan to get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led by the US becomes higher, because virtually there would be no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ce.

After all, all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if Japan take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Yet there still remains a strong anti-revisionist sentiments among the Japanese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crucial to pay attention how far the “interpretational revision” can suffice in dealing with Japan’s changing defense framework.

• **Keywords:** Japan’s rearmament, Japanese right-wings, Self-Defense Force, Japan Defense Agency,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Commission Y, GHQ

ARTICLES

The U.S. Role i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Focusing on the Claim Negotiation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 CHO Ah Ra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role of the U.S.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in the claim negotiation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ith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Change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claim negotiation were underpinned not only by the security logic in the Cold War context, but by the logic of economy. Facing the “dual task”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minimizing its own economic burden, the